

## 중재위원회의 또 다른 기능, 감정의 해우소

권혁남

전북중재부 중재위원,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살펴보던 노벨의 얼굴은 파랗게 질리고 만다. 자신이 나이 들어 은퇴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자신의 부고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린 것이다. 멀쩡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것도 억울한데, 부고기사의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다. 노벨이라는 대(大)기업가는 살아생전에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하여 커다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니 더욱 기가 막힐 일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난리를 폼을 것이다. 그러나 노벨은 달랐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서 자신에 대해 한참 동안을 반성하더니 마침내 오늘날의 노벨상 창설을 결심하게 된다.

이처럼 언론은 산사람도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막강하며 그 힘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언론의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언론의 자유가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자유는 아닌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여타의 인격권이나 기본권과 상충될 때 그 무게를 비교衡量하여 때로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례를 보면 언론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경우가 그렇다.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들은 언론사가 자신에 대해 거짓되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정보를 보도하였다 할지라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1964년의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설리반 사건이란 미국의 남부 앨라배마에서 시민운동 데모가 있었을 때 주 관리가 흑인들을 물리적으로 학대하자 『뉴욕 타임스』가 이를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고 이에 주 관리가 『뉴욕 타임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공인의 명예훼손은 '실질적인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죄"라고 선고하였다.

여기서 실질적인 악의란 관리의 평판을 손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진실을 무시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사실 재판정에서 뉴스보도가 권력 남용을 폭로할 목적이 아니라 악의에 의해 동기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설리반 사건 이후 40여 년 동안 어떤 정부 관리도 언론을 상대로 하여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없다.

공인이야 그렇다 치자. 그러나 일반인들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더욱더 황당하고 막막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본 사람 약 3명 중 2명(66.7%)은 우선적으로 언론사에 항의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힘없는 일반인들의 항의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005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신청인의 항의 또는 반론 요구에 대해 언론사의 44.6%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 27.2%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응답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타협적인 태도를 취한 경우'는 겨우 6.5%로 나타나 언론사에 항의한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자신의 항의, 반론에 대해 언론사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하였다.

언론사로부터 목살을 당한 일반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쌓인 채 심각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조차도 언론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그리고 중재위원회에서 이겨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가본들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해 자신을 갖지 못해 망설이게 된다.

지난해 전북중재부로 들어 온 사례가 그랬다. 신청인의 사연은 이렇다.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의 말에 따르면 의사인 남편이 병원의 여직원과 눈이 맞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딴 살림을 차려놓고 이혼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신청인인 부인이 이를 거절하자 남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신문사 기자를 찾아가 "부인이 딴 남자와 바람이 나 자신의 재산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는 사실무근의 고발장을 보여주고 이를 기사화하도록 부탁했다. 기자는 사실 확인절차 없이 단순히 남편의 고발장만을 가지고 보도했고 신청인은 동네와 학교에서 '왕따'가 되는 등 커다란 피해를 보고 말았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자식의 앞날을 위해 이혼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언론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는 것조차 주저하다가 마지막 날에 가서야 중재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결국 중재부에서는 해당 신문사에 정정보도를 신도록 조정 결과를 내놓았지만 이 정정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실추된 명예가 과연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복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필자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중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힘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보람을 갖기도 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중재위원회를 찾는 신청인들 중 상당수는 분노감, 배신감, 불안감, 때로는 수치심을 갖는다. 신청인들은 가슴속에 응어리진 감정들을 해당 언론사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모두 토해내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중재위원들이 이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신청인들의 감정도 많이 누그러지게 마련인데, 이 때 피신청인이 사과를 하면 신청인의 분노는 더욱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사회적으로 바쁜 생활을 하는 중재위원들이 빨리 조정을 끝내고 돌아가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만 인내심을 발휘해준다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억울하게 당한 힘없는 일반인들에게 아주 좋은 감정의 해우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조정뿐만 아니라 심적 조정까지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조정이 아니겠는가? □